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65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redacted]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환송 전 판결	[redacted]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1.
판 결 선 고	2019. 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3,815,090원, 가산세 26,600,120원, 농어촌특별세 4,380,370원, 가산세 2,659,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1. 3.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따라서 감액경정 이후의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3면 10행의 "기각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 11. 3.에 이르러 취득세 70,415,2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039,6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5. 3. 2.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면 2행, 11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 5면 2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10면 8행부터 11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원고 등은 쟁점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 ·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